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내 삶을 바꾸는	
에 하구단구	배포 일시	2021. 7. 26.(월) 총 5매(본문 2, 참고 3)	규제혁신 대한민국대전환 한국판뉴딜	
담당 부서 수산자원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정기원, 서기관 도윤정, 주무관 백하림 • ☎ (044) 200-5530, 5531, 5532			
보 도 일 시	2021년 7월 27일(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참여 어업인, 금어기·금지체장 규제 완화된다

- 7. 2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총허용어획량(이하 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수산자원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7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2019. 2.)'에 따라 어구·어법을 제한 하는 전통적인 어업관리 방식에서 생산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TAC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TAC, 조업보고 등을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어업인에게 기존의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금어기·금지체장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추가하는 등 수산자원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어기·금지체장을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①연간 TAC 준수, ②어선위치발신장치 장착, ③전자어획

보고시스템 적용 등 필수조건을 이행하고, 자율적 조업금지 설정, 해양 쓰레기 수거 등의 자원보호 조치를 추가적으로 이행할 경우 현행 금어기. 금지체장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어업 인의 자발적인 TAC 준수를 촉진하고, 개별 어업의 특성에 맞는 효과 적인 수산자원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일반야영장 설치'를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육상의 오염수 등 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이 구역 에서는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소한의 개발행위만 허용된다. 최근에는 하수처리시설의 발달, 산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간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는 자동차야영장 설치만 허용되었으나, 「관광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일반야영장도 설치 기준이 유사 하고 오염물질 배출 등의 위험이 적어, 수산자원 보호·육성 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일반야영장' 설치도 허용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기타 타법 제정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대상자를 규정한 관련법을 「수산업법」에서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변경하고, '어업'으로 통칭되고 있던 양식업을 분리 규정하는 등 구체화하였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TAC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수산자원관리제도도 더욱 합리적 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TAC 기반의 어업관리 제도가 정착되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 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경공부리 공공처럼통 자유이용하다.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1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 개정목적

□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업인의 TAC 참여를 촉진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 추진

2 주요내용

□ TAC 시범사업 참여시 금어기·금지체장 완화(제6조 제5항 신설)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 단체가 어종별
연간 어획량 최고한도를 준수하는 등의 자원관리사항을 이행하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금어기·금지체장 달리 적용

②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완화(제40조 제1항 [별표16]]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허가가 가능한 행위에 자동차야영장업
이외 일반야영장업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가

③ 기타 타법 제정에 따른 개정([별표 14], [별표16])

- [별표 14]의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대상자를 규정한 관련법을 「수산업법」 에서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변경하고, [별표 15]의 조성금 감액 대상자를 '어업자'에서 '어업자 및 양식업자'로 개정
- [별표 16]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 1호가목의 '농업·임업·어업용'에서 '농업·임업·어업·양식업용'으로 개정

참고2 TAC 규제완화 시범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수산혁신 2030 계획"('19.2)에 따라 어구·어법 등 전통적인 Input control을 총허용어획량 등 Output control로 전환 도모
- Output control로 전환 촉진을 위해 엄격한 TAC 및 모니터링 체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 추진
 - * (필수조건) ①전체 어획량 TAC 관리, ②위성기반 어선위치발신장치(INMARSAT) 장착, ③전자어획보고시스템 적용 / (선택조건) ①CCTV 설치. ②수산자원보호조치 강구

□ 시범사업 경과

- 신청 단체(28개)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의견조회 등을 거쳐 2개 단체, 3건 규제완화사항 최종선정 후 1차 시범사업 추진('20.5~'21.4)
 - * 어구·어법에 대한 규제완화 요청 사항에 대해「수산업법 시행령」및「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추진

<	최송	선정단체	및	규제	완화시	ㅏ항	>	

단 체 명	신청 업종	규제완화 요청사항	TAC 배분량
경인북부수협	연안개량안강망	1통의 어구만 사용 세목망 3개월 사용 허용	2,421톤
서해 안근해 안강망연합회	근해 안강망	어류분류망 변형 허용 (개폐구 사용 등) 어구전개용 중간세목망 사용 허용	83,006톤

○ 시범사업 평가 결과, TAC 총할당량을 준수하고 보고의무 등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1년 연장하여 시행(~'22.4)

□ 향후 계획

- 1차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2개 단체*) 연장 시행(~'22.4월) 및 모니터링 지속
 - * 경인북부수협 연안개량안강망(49척),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114척)

참고3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도

